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03호

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52호(2009.6.25.)로 정비구역 지정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제12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16일
서울특별시

1. 재정비촉진구역(정비구역)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	일몰기한	비고
당초 변경	전농12재정비 촉진구역	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	16,237	2009.6.25	2020.3.2. 2022.3.2.	2년 연장

2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(일몰)기한 연장

3.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18),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127-42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04호
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0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0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공고 제2008-800호(2009.01.02.)에 의하여 돈의문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3호(2009.01.29.)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1호(2009.07.0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지정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0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09.0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0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0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0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06.15.)